

建築物着工統計調査 施行規則

◎건설부령제161호

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1975년 9월 23일

건설부장관 團

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

제 1 조 (목적) 이 규칙은 통계법 제 2 조제 1 항 및 동법시행령 제 11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조사중 건축물의 착공통계조사(이하 “착공조사”라 한다)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정의)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① “건축물”이라 함은 건축법 제 2 조제 2 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.

② “주택”이라 함은 독채로 된 살림집, 아파트 등 완전히 구획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분으로서 한 가구가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축조된 건축물과 건축물의 부분으로서 1 개 이상의 방과 부엌 및 출입구를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한다.

③ “착공”이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굴토공사(증축 또는 개축으로서 굴토가 필요없는 경우에는 건축물을 축조하는 공사)에 착수하는 것을 말한다.

제 3 조 (조사대상) 착공조사는 대한민국의 영토내에서 착공되는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. 다만,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군사기밀에 속하는 건축물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.

제 4 조 (조사의 구분) ① 착공조사는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행한다.

1. 건축물착공 통계조사
2. 주택착공 통계조사
3. 보정조사

② 건축물 착공통계조사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.

③ 주택착공통계조사는 건축물중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.

④ 보정조사는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서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추출된 건축물에 대하여 실시한다.

제 5 조 (조사기간) ① 착공조사는 그 달에 착공신고된 건축물에 대하여 월단위로 실시한다.

제 6 조 (착공신고) ①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공사

를 착공한 후 7 일 이내에 별지 제 1 호서식에 의한 건축물 착공신고서 2 부를 작성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.

다만, 제 2 호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 5 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제출할 수 있다.

1. 건축허가대상건축물; 당해 건축허가기관
2. 건축법 제 5 조 단서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; 당해신고서 접수기관
3. 제 1 호 및 제 2 호 이외의 건축물: 읍·면장

② 건축법 제 7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착공신고서 2 부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신고서로써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서에 갈음한다.

제 7 조 (조사사항) 착공조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.

1. 건축물 착공통계조사

- 가. 건축주
- 나. 건축위치
- 다. 지역·지구
- 라. 건축물 용도
- 마. 대지면적·건축면적·연면적
- 바. 층 수
- 사. 건축물 구조
- 아. 공사종별
- 자. 공사기간
- 차. 공사비 예정액
- 카. 허가유무

2. 주택착공통계조사

- 가. 주택의 종류
- 나. 주택의 형태
- 다. 규모
- 라. 주택의 호수
- 마. 주택의 이용구분
- 바. 공사자금 조달방법

3. 보정조사

- 가. 보정조사대상으로 추출된 건축물에 관한 제 1 호 및 제 2 호에 계기한 사항. 이 경우에 “공사비예정액”을 “공사실시액”으로 한다.
- 나. 기타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사항

제 8 조 (조사방법) ① 제 6 조제 1 호 및 제 2 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착공신고서를 접수한 구청장(서울특별시 및 부산시의 구청장을 제외한다)은 그 기재사항을 확인한 후 접수한 날로부

터 5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.

②제 6 조제 3 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착공신고서를 접수한 읍·면장은 그 기재사항을 확인한 후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.

③시장·군수·구청장(서울특별시 및 부산시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된 착공신고서와 건축주가 제출한 착공신고서를 확인한 후 별지 제 2 호서식에 의한 착공신고서 접수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.

제 9 조 (신고서의 제출) ①시장·군수·구청장(서울특별시 및 부산시의 구청장을 말한다)은 제 8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서 1 부와 별지 제 3 호서식에 의한 착공신고서 총괄표를 다음달 10일까지 서울특별시·부산시장 또는 도지사(이하 "도지사"라 한다)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
②도지사는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송부한 착공신고서 및 착공신고서 총괄표와 시·도별 착공신고서 총괄표를 익월 15일까지 건설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
제 10 조 (보정조사) ①보정조사는 착공조사결과 보완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연 1 회 건설부장관이 임명한 조사원이 현지를 확인 조사한다.
②건축주·건축물 소유주 또는 관리자는 제 1

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시 조사원의 질문에 정확히 응답하여야 한다.

③보정조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에 관계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사원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.

제 11 조 (착공신고서 용지의 교부) 제 6 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 접수기관의 장은 건축주 또는 그 대리인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착공신고서 용지를 무상으로 배부하여야 한다.

제 12 조 (착공신고서 용지의 청구 및 배부) ①도지사는 익년도에 필요한 착공신고서 용지를 시·구·군별로 구분 산정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건설부장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.

②건설부장관은 청구받은 착공신고서용지를 매년 10월 31일까지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
③도지사는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송부받은 착공신고서 용지를 매년 11월 30일까지 제 6 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서 접수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
제 13 조 (신고서 및 결과표의 보존) 건설부장관은 도지사가 제출한 착공신고서와 총괄표를 1 년간 보존하고 착공통계표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197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에너지 소비절약 표어

에너지는 国力이다. 아껴써서 愛國하자.
기름으로 만든 전기. 한등꺼서 애국하자.

쓰고나면 再生없다. 에너지를 節約하자.

에너지를 아껴써서 외화지출 막아내자.
너도나도 걷기운동, 절약되고 건강준다.

訂 正

지난 9月号 P63 서울시 綜合廳舍 建立計劃 設計 出品 作品中 準優秀作 <高麗大學校 建築設計室 제공>의 入賞者 姓名을 아래와 같이 바로 잡습니다.
金哲姓을 金哲性으로
李炳鎬를 李鍾鎬로
誤植되었기 訂正합니다.